

문 의	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	과 장 서기관	최철승 배홍선	042-481-5331 042-481-5766
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1년 10월 19일(화)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의료정보용,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!

-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-

- ☐ 웹사이트 화면, 외벽이나 도로면·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, 가상 현실(VR), 증강현실(AR) 영상 등도 10월 21일(목)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.
 -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.
- ☐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용, 의료 정보용, 방범용,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 되었다고 밝혔다.
 -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.
 -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 하게 확보*할 수 있어서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.

- *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

□ 아울러 「한 벌 물품^{*}」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^{**}를 차단하기 위하여 **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10월 21일(목)부터 시행된다.**

- *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

- ** 구성 물품(숟가락, 포크, 나이프)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**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**을 모방하면서 기타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 회피 (한 벌의 물품은 전체로서 비교 판단하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 불성립)

□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, **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**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**획기적인 전환**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화상디자인 제도 개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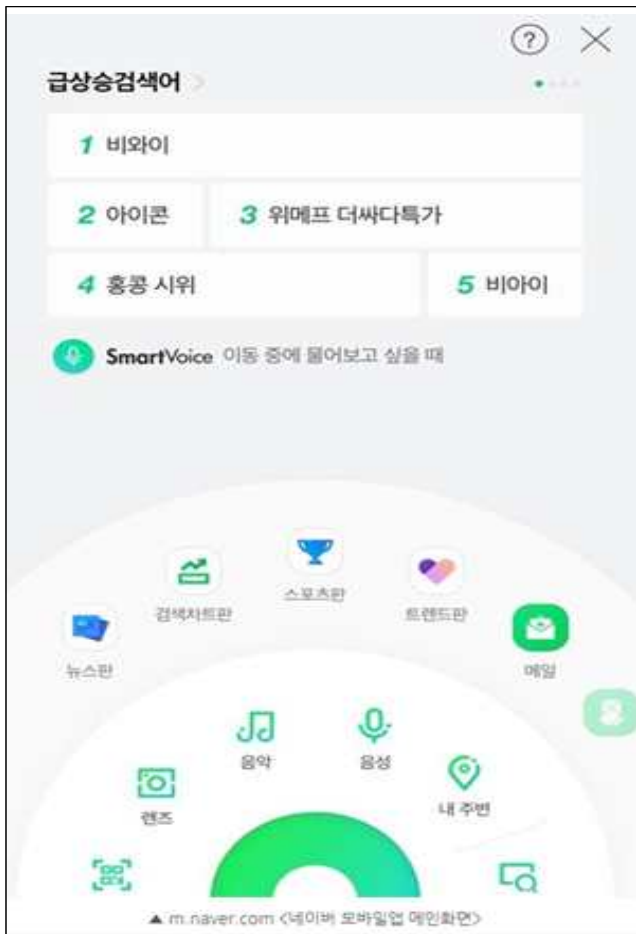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디자인심사정책과 배흥선 서기관(☎ 042-481-57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“화상디자인”이란 화상(畵像)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(美感)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한다.
- “화상”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·기호 등을 말하며, 기기(器機)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.
 - “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”이라 함은 대상기기가 기능에 따라서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시를 주는 화상을 말하며,
 - “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”이라 함은 대상기기의 기능 발휘가 실현되는 화상으로서 화상 중에 대상기기의 기능 실현과 관련이 있는 도형 등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
- ※ (주의) TV 방송 화상, 영화, 풍경사진 등과 같이 기기의 조작과 기능 발휘와 관련이 없는 관람목적 또는 콘텐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화상 또는 영상은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.
-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용 화상, 의료정보처리용 화상, 방법용 화상, 정보표시용 화상, 건강관리용 화상 등 같이 화상의 용도(~용 화상)를 포함한 명칭으로 기재한다.
- 화상디자인이 (1)과 (2) 또는 (1)과 (3)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디자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한다.
 - (1) 두 화상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 - (2) 두 화상디자인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 - (3) 두 화상디자인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

붙임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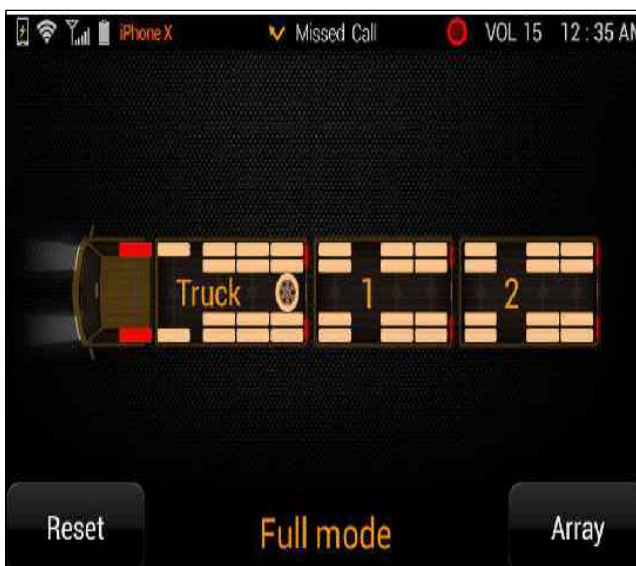
화상디자인 보호 사례



모바일 웹 메인 메뉴용 화상(조작)



상품주문, 무인결제 및 정보제공을 위한 조작표시기로 사용하는 화상(조작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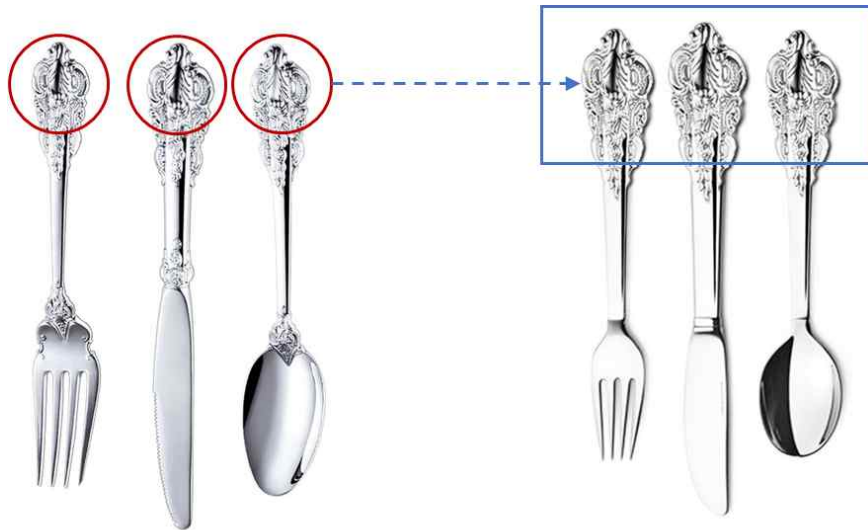
운송차량의 타이어에 대한 공기압과 온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(기능 발취)



선박엔진의 온도, 전압, 유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(기능 발취)

□ 한 벌 물품의 부분디자인 보호 예시

- 구성 물품(숟가락, 포크, 나이프)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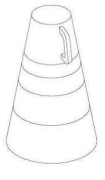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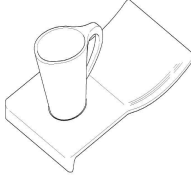


<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제도 >

- 2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

*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(1961.12. 의장법 제정 시부터 시행)

- ▶ (예시) 한 벌의 나이프, 포트 및 스푼세트,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, 한 벌의 장신구 세트,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등

			
숟가락, 포크, 나이프	캠핑용 식기세트	찻잔 및 받침접시	자기 세트